

주주총회의 실무

1. 주주총회의 개요

가. 의의와 기능

(1) 의의

주식회사의 필요적 기관으로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 주주총회, 업무집행기관으로서의 이사회와 대표이사, 감사기관으로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있음.

주주총회(stockholders' meeting)는 회사의 구성원인 주주들이 모여 이사로부터 영업에 관한 보고를 받고 재무제표 및 이익배당의 안을 승인하거나 이사, 감사 등을 새로 선임하는 등 법률과 정관에 의하여 정해 놓은 중요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는 회의체인 기관임.

여기서 결정된 사항을 회사의 의사로 삼고 대표이사등 다른 기관들은 이를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 그 결의는 어디까지나 회사내부에 관한 사항에 그칠 뿐, 외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도 가지지 않음.

만약,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결의를 무시하고 제3자와 법률 행위를 한 경우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 그 행위는 유효하며 회사는 총회의 결의에 어긋나는 것을 이유로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함.

다만, 사후설립 및 분할, 영업양도 및 양수 등 상법 제374조

에 계기하는 계약, 자본감소, 합병 등과 같이 법률상 주주총회의 결의가 그 행위의 유효요건을 이루는 것이라고 해석되는 경우에는 결의의 유무가 그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침.

(2) 기능

1) 경영감독기능

회사의 주요의사를 결정하고 대표이사 또는 이사·감사를 선임함으로써 주식회사의 기관이나 그 구성원을 구성하는 권한을 통하여 주주총회는 경영자나 감사에 대한 감독을 수행할 수 있음.

2) 주주의사의 결집기능

서로 다른 의사를 가진 다양한 주주의 의사를 모아 다수주주가 원하는 방향으로 회사를 운영함.

3) 회사의 정보공시기능

주주총회를 통하여 회사는 영업성과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주주와 채권자들은 그 정보에 접할 기회를 갖게 됨.

4) 회사의사의 결정기능

회사의 주요사항은 주주들에 의하여 주주총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됨으로써 회사의 업무집행이 진행됨.

나. 결의사항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은 반드시 주주총회에서 결의하여야 하며, 정관으로 다른 기관의 결정에 일임하지 못함. 다만, 기본사항은 총회에서 결정하고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맡길 수 있음.

또한, 주주총회는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해 놓은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음(상법 제361조). 만약 여기에 없는 사항을 결의하는 경우 그 결의는 법률상 효력이 없음.

다만, 정관에 정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을 넓힐 수도 있음.

(1) 상법상의 결의사항

결의방법에 따라 다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

- ① 보통결의사항(기본결의) :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는 사항
- ② 특별결의사항 :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는 사항
- ③ 특수결의사항 : 총주주의 동의 내지 총주주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1) 보통결의사항

- ① 감사인의 선임(상법 제366조 제3항, 제367조)
- ② 이사·감사의 선임(상법 제382조 제1항, 제409조 제1항)

- ③ 이사·감사에 대한 보수의 결정(상법 제388조, 제415조)
- ④ 청산인의 선임·해임과 그 보수의 결정(상법 제531조, 제539조 제1항, 제542조 제2항, 제388조)
- ⑤ 재무제표의 승인(상법 제449조 제1항, 제533조 제1항, 제534조 제5항)
- ⑥ 주식배당(상법 제462조의2 제1항)
- ⑦ 청산종결의 승인(상법 제540조 제1항)
- ⑧ 흡수합병의 합병보고총회(상법 제526조 제1항) 이사회의 공고로 대신할 수 있음(동조 제3항).
- ⑨ 총회의 연기 또는 속행의 결정(상법 제372조 제1항)

2) 특별결의사항

- ① 정관의 변경(상법 제434조)
- ②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등(상법 제374조)
 - ※ 단순한 영업재산의 양도나 이미 중단하고 있는 영업부문의 재산양도는 해당되지 않음. 단, 영업재산의 처분 또는 담보의 제공으로 인해 영업의 양도나 해지의 효과가 나타날 때는 영업양도로 간주(대법원 판례)
 - ※ ‘중요한 일부’의 의미는 한 개의营业을 하는 회사의 경우 그 영업의 중요한 일부, 두개이상 营业을 하는 회사의 경우 그 중 중요한 일부의 营业과 그런 营业 중 중요한 일부가 이에 해당됨.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65조의4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6에서는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중요한’ 营业 또는 자산의 양수

또는 양도」로 봄. 이에 실무적으로는 주주총회의 승인이 필요한 상법상 '중요한' 영업의 양·수도 기준으로 이해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있음. 그러나, 동법 시행령상의 요건을 적용하여 이에 미달하더라도 그 밖의 사정에 비추어 중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얻어야 함.

- ㉠ 양수·양도하려는 영업부문의 자산액(또는 매출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또는 매출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양수·양도
 - ㉡ 영업의 양수로 인하여 인수할 부채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부채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양수
 - ㉢ 영업전부의 양수
 - ㉣ 양수·양도하려는 자산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양수·양도(다만, 일상적인 영업활동으로 상품·제품·원재료를 매매하는 행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의 양수·양도를 제외)
- ③ 사후설립(상법 제375조)
 - ④ 이사·감사의 해임(상법 제385조 제1항, 제415조)
 - ⑤ 자본의 감소(상법 제438조 제1항)
 - ⑥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상법 제417조 제1항)
 - ⑦ 주식의 분할(상법 제329조의2)
 - ⑧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중요한 사항(상법 제513조 제3항, 제516조의2 제4항)
 - ⑨ 회사의 해산(상법 제518조)
 - ⑩ 회사의 계속(상법 제519조)

- ⑪ 신설합병의 경우 설립위원의 선임(상법 제175조 제2항)
- ⑫ 회사의 합병계약서의 승인(상법 제522조 제1항, 제3항)
- ⑬ 회사의 분할·분할합병, 물적분할(상법 제530조의3, 상법 제530조의12)
- ⑭ 주식의 포괄적 이전·교환(상법 제360조의3, 상법 제360조의16)
- ⑮ 이익에 의한 주식소각(상법 제343조의2)
- ⑯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상법 제340조의2, 상법 제542조의3)

3) 특수결의사항

- ① 발기인,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 등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상법 제324조, 제400조, 제415조, 제462조의3, 제542조 제2항) → 총주주의 동의
- ② 주식회사의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상법 제604조 제1항) → 총주주에 의한 총회의 결의

(2) 정관에 의한 결의사항

상법상 이사회 결의사항임에도 이를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확대하여 정관에 규정할 수 있음.

- ① 대표이사의 선임(상법 제389조 제1항 단서)
- ② 신주발행사항의 결정(상법 제416조 단서)
- ③ 준비금의 자본전입(상법 제461조 제1항 단서)

- ④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사항의 결정(상법 제513조 제2항 단서, 제516조의2 제2항 단서 등)

그 밖에 명시된 규정이 없더라도 주식회사의 본질이나 강행 법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어떠한 사항이라도 정관에 규정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할 수 있고(예 : 일정액 이상의 계약 체결이나 투자 또는 계열회사에 대한 담보 제공이나 채무 보증 등), 다만 이사회가 갖는 주주총회의 소집권만은 성질상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임.

※ 상장회사의 경우 정관 규정으로 주주총회 결의사항을 확대한 예는 흔치 않음.

(3) 특별법상의 결의사항

청산 중이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조)

다. 주주총회의 종류

(1) 정기 또는 임시 주주총회

주주총회의 소집시기에 따라 정기주주총회(매 결산기마다 소집)와 임시주주총회(필요에 따라 수시 소집)로 구분하며 단지 그 소집시기만 다를 뿐 그 권한은 동일함.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이 강제되는 경우는 법원의 명령에 의한 때(상법 제467조), 주식교환·주식이전의 승인을 얻기 위한 때(상법 제360조의 3, 제360조이 16), 합병계약서의 승인을

위한 때(상법 제522조), 흡수합병의 보고총회를 개최할 때(상법 제526조),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을 얻기 위한 때(상법 530조이 3), 청산개시시 또는 청산 종료시, 청산인이 재산관계서류의 승인을 요구한 때(상법 제533조 제1항, 제540조 제1항) 등이며

소수주주가 소집을 청구하거나 스스로 소집하는 경우에도 임시주주총회에 해당되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할 시기에 정기주주총회가 도래하면 여기서 그 의안들을 다루면 됨.

(2) 일반 또는 종류주주총회

회사가 수종의 주식(보통주, 우선주, 후배주, 상환주, 전환주, 혼합주 등)을 발행한 경우 사안에 따라 주식의 종류별로 이해를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종류의 주식을 가진 주주들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함(상법 제435조).

※ 종류주주총회는 반드시 일반주주총회와 다른 일시와 장소에서 할 필요는 없으나 그 개최의 취지가 담겨진 별도의 통보와 소집절차가 필요함. 다만, 종류주주총회가 독립하여 개최하더라도 그 소집은 편의상 일반주주총회의 소집통지서에 그 통지를 함께 기재하여 발송하거나 일시, 장소를 일반주주총회와 병행하는 것은 무방하며 그 결의시점은 일반주주총회의 정관변경결의가 있는 직후에 하면 편리함.

종류주주총회를 필요로 하는 경우

- ①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의 주주들에게 손해를 미치게 되는 경우(상법 제435조 제1항)

예) 우선주의 우선배당 금액 또는 증액 등 발행조건 변경시

② 주식의 종류에 따라 주식의 인수, 병합, 소각에 관하여 특수한 정함을 하는 경우(상법 제344조 제3항)

③ 회사의 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상법 제436조, 제530조의3)

예) 수종의 주식 간에 합병비율이 서로 상이할 때

종류주주총회의 결의요건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그 종류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상법 제435조 제2항)이며 무의결권주식의 주주도 의결권을 가짐.

다만, 이러한 결의요건을 정관으로 완화하는 것은 불가능함.

(3) 연회와 계속회

연회 또는 계속회는 주주총회가 열린 다음에 그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으며(상법 제372조 제1항) 그 결의의 효력은 실체로 그 결의가 이루어진 날에 발생함.

※ 연 회 : 총회가 성립한 후 미처 의안을 다루지 못하고 회일을 후일로 다시 정하는 열리는 총회

※ 계속회 : 총회를 열어 의안의 심의에 착수하였으나, 결의에 이르지 못하고 회일을 다시 정하여 동일 의안을 계속 다루는 총회

연회 또는 계속회는 당초의 총회와 이어진 하나의 총회이므로 별도의 소집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며(상법 제372조 제2항) 당초 총회의 의결권 행사의 대리인은 연회 또는 계속회에서도 당연히 대리권을 유지함.

연회 또는 계속회를 결의하는 경우에는 총회일로부터 2주 이내에 그 일시, 장소를 정해야 함(상장회사 표준주주총회 운영규정 제31조).

2. 주주의 의결권

가. 의의와 성질

의결권은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의안의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이는 공익권임과 동시에 고유권의 일종으로서 정관의 규정으로도 이를 박탈하거나 제한할 수 없음.

다만, 법에 예외적으로 이 의결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음.

(1) 기명주주의 의결권 행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는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명의개서가 마쳐진 자임.

(2) 무기명 주주의 의결권 행사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회일의 1주간 전에 그 주권을 회사에 공탁하여야 함(상법 제368조 제2항).

나. 의결권의 수

모든 주주는 1주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지며(상법 제369조 제1항) 주주는 이를 통하여 회사의 의사결정에 참가하는 것임.

「1주 1의결권의 원칙」은 강행 법규이므로 법이 특별히 인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정관 규정이나 주주총회 결의라 하더라도 의결권을 배제·제한하거나 1주에 대해 2 이상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음. 다만, 집중투표제는 법이 규정한 하나의 예외임.

다. 집중투표제

(1) 의의

집중투표제는 동일 주주총회에서 복수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선임되는 이사의 수와 동수의 의결권을 각 주식에 부여하고 주주가 그 의결권을 1인의 후보자에게 집중적으로 행사하거나 복수의 후보자에게 분산적으로 행사하거나 자유롭게 인정하는 제도임(상법 제382조의 2).

이는 다수주주 대표의 이사회진입을 확보하여 경영진의 업무집행을 감독하고 대주주와 경영자간의 대립을 조정하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반면에, 이사회 구성에 당파적 대립이 조장되어 이사회 운영의 기동성과 효율성을 상실하게 될 수 있으며 이사선임에 있어서 투표관리를 위한 사무절차가 매우 복잡하게 되는 단점도 있음.

(2) 실시절차

- 1) 회사는 총회소집의 통지·공고시에 총회에서 선임할 이사의 원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며 총회에서는 명시된 원수의 이사만 선임할 수 있고 이를 변경하지 않아야 함.

2)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서면에 의하여 회일의 7일전 까지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소수주주의 지분요건은 그 청구시부터 선임결의를 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함.

※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상장법인과 코스닥법인의 경우에는 집중투표를 요청할 수 있는 소수주주권을 100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고 있으며,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거나 배제된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 이상을 소유한 주주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음(상법 제542조의7 및 상법시행령 제12조).

- 상장법인과 코스닥법인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정기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 6주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회사에 청구하도록 함(상법 제542의7 제1항).

- 상장법인 및 코스닥법인이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변경의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항의 정관변경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함(상법 제542조의7) 만일 별도로 의안을 상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상법 제635조).

3) 총회의 의장은 집중투표에 의하여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의결에 앞서 집중투표의 청구가 있었다는 취지를 총회에서 알려야 하며

4) 집중투표는 반드시 투표용지에 의한 투표를 해야 하므로 출

석주주를 확인하고 그 의결권의 수를 산정하며 이사후보별로 투표를 집계하는 등 투표의 절차를 밟아야 함.

- 5) 회사는 총회 종결시까지 본점에 집중투표청구서를 비치하여야 하며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를 열람할 수 있음.

(3) 효력

집중투표의 청구는 동일총회에서 2인 이상의 이사선임이 총회소집의 통지·공고에 명시된 이후에만 할 수 있으며 그 이전에 한 청구는 그 효력이 없음.

총회소집의 통지·공고시에 단수이사의 선임으로 기재하고 복수이사를 선임하거나 복수이사의 선임으로 기재하고 그 원수를 변경하거나 단수이사를 선임하는 것도 인정되지 않으며

다만, 복수이사 선임의 소집통지·공고 후 이사후보자의 사퇴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단수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며 이 경우 집중투표를 실시하지 않아도 됨.

집중투표를 청구한 소수주주는 이사선임 투표 이전에 이를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으며 이를 청구한 소수주주 전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중투표의 청구를 철회한 것으로 봄.

라.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

(1) 의의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며(상법 제368조의 3) 일종의 부재자투표임.

이는 소액주주로 하여금 회사의 중요사항의 결의에 참여하여 회사의 경영에 관심을 갖게 하며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에 이바지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반면, 자칫 주주총회의 형해화를 촉진할 수 있는 위험이 있음.

(2) 요건 및 절차

회사의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주식회사는 정관에 주주에게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어야 하며 회사는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가 서면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3) 효과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주주가 직접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음.

서면투표는 어디까지나 보충적인 방법임. 따라서 주주가 서면투표 이후에 직접 출석하거나 또는 대리인을 출석시켜 의결권을 행사하면 서면투표는 효력을 상실함.

마. 전자투표제(2010.5.29. 이후부터 이용가능)

(1) 의의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상법 제368조의4 및 상법시행령 제5조의2)

(2) 절차

전자투표제를 채택한 회사는 소집통지나 공고를 할 때에는 주주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함.

전자투표제를 채택한 회사는 총회의 소집통지시에 주주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총회의 소집통지나 공고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함.

- ① 전자투표를 할 인터넷 주소, ② 전자투표를 할 기간(전자투표의 종료일은 주주총회 전날까지로 하여야 함), ③ 기타 주주의 전자투표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주주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공인인증서)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자투표를 한 주주는 해당 주식에 대하여 그 의결권 행사를 철회하거나 변경하지 못함.

회사는 의결권 행사에 관한 전자적 기록을 총회 종료후 3개월간 본점에 두어 열람하게 하고, 총회 종료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함.

바. 의결권 행사의 제한

1주 1의결권의 원칙은 예외적으로 상법과 특별법 또는 가처분결정이나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이의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음.

(1) 의결권 없는 주식(상법 제370조)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만을 의결권 없는 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으며 그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함.

다만, 상장법인과 코스닥법인(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법인 포함)에 한해 ① 외국에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② 국민경제상 중요 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까지 발행 가능(자본시장법 제165조의15)

의결권의 부활 : 정관에 정한 우선적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받는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까지는 의결권이 회복됨(상법 제370조 제1항 단서). 회사분할을 승인하기 위한 의안에서는 의결권 없는 우선주라 하더라도 항상 의결권이 있음(상법 제530조의3 제3항).

우선주의 최저배당률이 규정된 '95년 개정 상법 이후 발행된 우선주를 소위 '신형우선주'라 하여 상장회사 표준정관에도 이에 관한 규정만 존치하고 있음. 그러나, '95년 이전에 발행된 '구형우선주'의 경우는 신형우선주에 관한 정관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적용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우선주에 관한 과거 정관 규정도 삭제하지 않고 병기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의결권의 일시적 제한

1) 자기주식(상법 제341조)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보유가 금지되는 것이고 회사가 자기의 의사를 결정하는 주주총회에 참가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의결권이 없음.

※ 자기주식은 이익배당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신주인수권도 허용되지 않음.

2) 상호보유주식(상법 제369조 제3항)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음.

※ 100분의 10의 의미 :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비율이지 그중 의결권 있는 주식에 대한 비율은 아님.

※ 주식취득의 통지의무(상법 제342조의3) : 회사는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그 다른 회사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해야 함.

3) 특별 이해관계에 있는 주식(상법 제368조 제4항)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주주는 그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함(상법 제368조 제4항).

※ 특별 이해관계 : 특정한 주주가 주주로서의 지위와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예, 주주가 회사의 영업을 양수하는 경우, 주주인 이사 또는 감사의 퇴임시 그 퇴직위로금을 정하는 경우 등)를 말함. 그러나, 주주인 지위에서 회사 지배와 관련된 결의(예, 이사·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서 당사자이며 주주인 이사·감사는 특별 이해관계인으로

볼 수 없음.

4) 감사선임 결의에 있어서의 제한(상법 제409조 제2항)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수의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함.

※ 이 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 및 의결권 수에 산입되지 않음.

4)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상법 제542조의12)

상장법인 감사 선임 및 해임결의에 있어서의 제한

※ (a) 최대주주 본인 (b)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c)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d)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한 주식을 합해서 3% 이상인 경우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정관으로 그 비율을 더욱 낮출 수 있음)

자산 2조원 이상 상장법인 감사위원 선임결의에 있어서의 제한

i)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상법상 감사 선임시의 의결권 제한과 동일

ii) 사외이사 아닌 감사위원 :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과 그들에게 위임한 주식에 대해서는 3%까지만 의결권 행사하되 나머지 주주들은 3% 초과 소유주식의 의결권 제한을 받지 않음.

(3) 특별법상의 제한

1) 은행법상의 제한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의 주식을 한도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의 의결권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임(은행법 제16조).

3) 공정거래법상의 제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그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4) 가처분결정에 의한 제한

법원이 어느 주주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의 금지를 명하는 가처분결정을 내린 경우 의결권행사는 제한을 받음.

사.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1) 의의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는 주주가 2개 이상의 의결권을 보유한 경우 어떤 의안에 대하여 일부는 찬성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일부는 반대로 허용하는 것임(상법 제368조의2).

의결권 불통일행사의 실익은 명의상 주주의 배후에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2인 이상의 주주가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행사하는 데 있음.

(2) 절차 및 방법

주주가 의결권을 통일하지 않고 행사하려고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함(상법 제368조의2 제1항).

이 통지는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의 요건이므로 주주가 통지없이 의결권을 불통일 행사한 경우 결의취소의 원인이 된다고 보며

불통일 행사의 통지를 한 주주가 총회에서 통일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가능하며

불통일 행사가 복수의 대리인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위임장에 각 대리인의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의 수를 기재하여야 함.

회사가 위임장을 권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위임장에 의결권을 불통일 행사하는 뜻 및 이유를 기재하고 찬부의 수를 표시하여 회일의 3일 전에 반송할 때 이를 불통일 행사의 통지로 풀이함.

(3) 불통일 행사의 거부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외에는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거부할 수 있음(상법 제368조의2 제2항)

불통일 행사의 거부를 결의전(그 주주의 의결권 행사시까지)에 하여야 하며 불통일 행사는 의안마다 따로 할 수 있으며 소유주식 중 일부의 의결권은 행사하고 나머지 부분을 행사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다고 봄.

아. 의결권의 대리행사

(1) 방법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대리행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 proxy)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함(상법 제368조). 다만, 미리 의결권 대리행사를 회사에 통지하는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하였다 해도 이를 제한할 수 없음.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위한 대리권의 수여는 주주총회시마다 하여야 하며 총회의 참석장 및 위임장은 다음 주주총회의 개최시까지 1년간 정도 보관하는 것이 적당함.

대리인은 주주로부터 권리를 수임한 대로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하며 이에 위반하여 기권하거나 주주의 명시된 의사와 달리 행사하면 주주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됨.

(2) 대리인의 수

대리인을 1인만 선임해야 한다는 주장과, 2 이상의 대리인을 선임하여 의결권의 일부에 대해 위임할 수 있다는 학설상 대립이 있으나

우리 판례에서는 ‘대리인의 선임이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의결권의 대리행사로 말미암아 주주총회의 개최가 부당하게 저해되거나 회사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음 (대법원 2001.09.07 선고 2001도2917 판결)

(3) 대리인 자격의 제한

회사의 정관에 대리인의 자격을 주주로 한정하는 경우가 있으나, 주식이 널리 분산된 회사의 경우 주주로 한정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상장회사표준정관에서는 대리인의 자격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있음.

다만, 주주가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또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의결권을 행사하며 이 경우 의결권을 대리 행사하는 것이 아님.

※ 중복위임장의 처리

동일 주주명의로 2개 이상 위임장이 제출되어 의결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위임이 발생하는 경우 우선 각 위임장의 작성일자를 확인할 수 있다면 시간적으로 나중에 작성된 위임장에 의해 먼저 작성된 위임장이 철회된 것으로 보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되며 만약 위임장의 작성일자 확인이 불가능하고 주주의 의사도 달리 확인할 수 없다면 누구에게 대리권을 부여하였는지에 관한 주주의 의사가 불명확하므로 주총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당 위임장 모두에게 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됨.

자.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1) 의의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는 특정회사의 주주에게 그 의결권의 행사를 자기 또는 타인에게 위임하여 달라고 권유하거나, 의결권의 행사(불행사) 또는 의결권 위임의 철회를 요구하는 행위 등을 말함(자본시장법 제152조).

회사 측에 의해 시도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 확보를 위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밖에 새로이 경영권을 쟁취하고자 하는 등의 경우에 시도됨. 이때 피권유자인 주주에게 의결권대리행사에 필요한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권유절차가 제한됨(피권유자의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 교부의무, 참고서류 기재사항 및 사본의 감독당국 제출의무 등).

다만, 발행회사 및 그 임원(특별관계자 포함)외의 자가 10명 미만의 자에게 의결권대리행사를 권유하는 경우, 신탁 기타 법률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소유하는 자가 그 타인에 대하여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는 경우,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광고(신문, 방송등)를 통해 의결권행사를 권유하는 경우는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1조).

(2) 규제장치

위임장 권유에 의한 의결권 대리행사를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 의결권이 주주의 의사나 이익에 반하여 회사 지배권의 유지나 쟁위를 위하여 남용될 위험이 있음.

따라서 자본시장법에서는 주주에게 중요한 정보를 공시하고, 백지위임을 막기 위하여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와 관련한 주주보호장치를 하고 있음(자본시장법 제1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0조).

① 권유의 방식 :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각 항목에 대하여 찬부표기가 가능한 위임장 송부양식을 직접 전달 또는 우편(FAX), E-Mail 등으로 송부하거나, 주주총회 소집통지와 함께 동봉함.

② 공시의무 : 권유자는 법률 등에 의해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작성하되, 이를 피권유자에게 송부하기 5일전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공시하여야 함(자본시장법 제153조 및 제157조, 동법 시행령 제163조)

※ 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의 개요, 주주총회의 각 목적사항 및 의결권대리행사를 권유하는 취지를 기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증발공규정') 제3-15조]

차. 우리사주조합원의 의결권 행사

우리사주조합 대표자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의사표시 내용에 따라 주주총회 의안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함(근로자복지기본법 제31조).

그러나, 우리사주조합원이 의결권 행사의 위임을 요청한 경우에는 당해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보유분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를 그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위임하여야 함.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가 우리사주조합원 개인별 계정에 배정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는 다음의 방식에 의하여야

함(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 1)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주주총회 의안에 대한 의사표시를 받거나 의결권 행사의 위임요청 여부를 확인하여 당해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조합원에게 당해 의결권을 위임할 것.
- 2) 미리 정한 기간 동안 의사표시 또는 위임요청이 없는 주식의 의결권은 당해 주주총회의 참석 주식수에서 의사표시가 없거나 위임의 요청이 없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그 의결권을 행사할 것(shadow voting)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가 조합계정으로 보유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방식 중 조합과사업주가 협의하여 규약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행사함(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 ① 개인별 계정에 배정된 주식에 대한 의사표시가 있는 조합원의 의사표시 비율과 동일한 비율대로 행사할 것
- ② 당해 주주총회의 참석 주식수에서 의사표시가 없거나 위임의 요청이 없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행사할 것
- ③ 조합원총회에서 정한 의사표시의 내용에 따라 행사할 것

카. 집합투자업자 등 의결권 행사 등 공시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함)는 주주총회에서 자유롭게 의결권 행사가 가능함. 다만,

계열회사 관계에 있거나 계열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경우에 있어서는 새도우 보팅(Shadow voting)을 하여야 하며, 합병 및 영업 양수도, 임원 임면, 정관변경,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집합투자재산의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에는 계열회사 관계에 있거나 계열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경우라 하더라도 자유롭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자본시장법 제87조).

신탁회사 및 투자회사의 경우 집합투자회사의 경우와 유사하게 신탁재산등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자본시장법 제112조 및 제186조).

(1) 의결권공시대상법인

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회사등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100억원 이상을 보유하는 주식의 발행법인에 대하여 의결권행사내용을 공시하여야 함(자본시장법 제87조 제8항, 제186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90조). 신탁회사는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선임 등 경영권의 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행사내용을 공시하여야 함(자본시장법 제112조 제7항).

(2) 공시방법(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82조)

집합투자업자 등은 상장법인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주주총회 5일전까지 공시하여야 함. 다만 안전이 확정되지 않아 공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전까지 그 뜻을 공시함. 새도우 보팅(Shadow voting)을 하는 경우에는 공시의무 없음.

의결권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구체적인 내용 및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행사하지 아니하는 구체적인 사유(신탁회사는 제외)를 공시하여야 함.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 아니더라도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행사내용을 공시하여야 함.

의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공시하였다고 하여 이를 의결정족수에 산입하는 것은 아니며, 주주총회에 참석 또는 위임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의결정족수에 산입됨.

3. 주주총회의 소집준비

적법하고 효율적인 주주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상의 제반 요건을 점검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함.

가. 재무제표등의 제출

이사는 그 사업년도의 결산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또는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총회 6주전까지 감사(감사위원회)·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함(상법 제447조 내지 제447조의3,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결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및 외부감사는 총회 1주전까지 원료, 감사보고서가 이사(대표이사)에게 제출되어야 함.

나. 총회 상정안건 점검

상법·증권거래법 등 관련법규상 규정사항의 정관반영 여부를 점검하여야 함.

- ① 이사회 결의사항의 범위, 이사의 업무보고요구권, 이사의 업무집행상황 정기보고 의무 등 이사회운영 활성화 관련 사항 (상법 제393조 제1항)
- ② 집중투표제 도입, 집중투표제 실시요구 청구 등 (상법 제382조의2, 상법 제542조의7)
- ③ 소수주주의 사외이사 후보 추천(상법 제542조의6)
- ④ 사외이사 결원보충, 이사후보자에 관한 사항의 통지·공고, 사외이사 등의 이사회 출석률 등의 통지·공고, 회사비용에 의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의 전문가 조력, 사외이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 등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제도 관련사항(상법 제542조의8, 제542조의11)
- ⑤ 주주제안 (상법 제363조의2, 상법 제542조의6제2항)
- ⑥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일부의 양수 (상법 제374조 제1항)
- ⑦ 우리사주조합제도 (근로자복지관리기본법 제31조)
- ⑧ 주주외의 자에 대한 신주배정에 관한 제한 (상법 제418조 제2항)
- ⑨ 지주회사 설립과 관련한 포괄적 주식교환 및 주식이전 관련 사항 (상법 제360의2조 내지 제360조의23)
- ⑩ 정기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주식소각 (상법 제343조의2), 이사회결의에 의한 이익소각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는 뜻을 특별결의에 의해 정관에 정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

- ⑪ 스톡옵션의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부여 및 이사회결의에 의한 부여한도, 스톡옵션 행사 경과기간 요건 등 관련사항 (상법 제542조의3)

다. 최근 관계법령 개정사항의 정관반영 여부 점검

회사의 현행 정관, 최근 개정법규의 내용을 비교하여 적절한 반영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며 이 경우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표준정관 개정·권고내용을 참조하도록 함.

라. 관련법령에 규정된 총회 보고사항 점검

- ① 결산자료 (영업보고서,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등)
- ② 최대주주등과의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승인 및 총회보고 (상법 제542조의9)
- ③ 정관 규정 및 이사회결의에 따라 이익에 의한 주식소각 및 총회 보고(자본시장법 제165조의2)
- ④ 외부감사인 보고(외감법 제4조)

마. 주주의 의결권 관련사항 점검

- ① 무의결권주식의 의결권부활 여부
- ② 주주의 의결권행사 제한 내용

사외이사, 상근감사,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시의 일정비율 초과 주식에 대한 의결권제한

증권예탁원, 위임장권유자의 의결권 대리행사 관련사항
자기주식, 자회사가 소유하는 모회사 주식, 특별이해관계
있는 주식, 특별법에 의한 의결권행사 제한

- ③ 주주의 의결권 불통일행사 관련 사항
- ④ 우리사주조합원의 의결권행사 관련사항

4 주주총회의 소집

가. 총회의 소집권자

주주총회를 개최하기 위하여는 다음의 소집권자가 법정의
절차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여야 함.

(1) 이사회

통상적으로 이사회에서 주주총회의 개최 및 그 일시·장소·
의안 등을 결의하고(상법 제362조) 이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
가 주주총회를 소집함.

이사회의 결의 없이 대표이사가 주주총회를 단독으로 소집
하거나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가 소집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訴의 대상이 되며 이사회결의
없이 소집권한이 없는 이사가 소집한 경우에는 결의부존재
의 원인이 됨.

(2) 소수주주

소수주주가 대주주나 대주주의 지지를 받는 경영진에 대항

할 수단을 마련해 주기 위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소수주주(의결권없는 주식의 주주도 포함)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음 (상법 제366조).

※ 소수주주의 소집청구는 정당한 이유가 전제되어야 함.

다만, 상장회사의 경우 6월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있는 발생주식총수의 100분의 3 (최근 사업년도말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인 법인의 경우 100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위임장 취득 또는 2인 이상 주주의 주주권 공동행사 포함)한 자가 이러한 소수주주권을 가짐.

이사회가 이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총회의 소집결의를 하고 그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만일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에는 소수주주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스스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음 (상법 제366조 제2항).

이때 소수주주가 바로 소집권자로서 회사의 기관이 되며 그 소집에 필요한 비용은 회사의 부담으로 돌아가며, 회사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협력하여야 함.

소수주주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접 소집한 경우 주주총회의 의장은 정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집된 총회에서 선임하여야 하며 제출한 동일의안에 관하여 이사회와 대표이사는 소집권이 없다고 봄.

이렇게 소집된 주주총회에서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를 위하여 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상법 제366조 제3항) 특히, 이러한 총회는 회사의 재산상태 악화에 대한 대책을

세우거나 임원의 해임을 피할 때에 중요한 의미가 있음.

(3) 감사(감사위원회)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이하 '감사 등')의 조사나 이사의 보고에 따라 감사 등이 이사회에 적절한 조치를 촉구하여도 이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감사 등이 직접 임시총회의 소집을 이사회에 청구할 수 있음.

이때 감사 등은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사회가 지체없이 소집절차를 밟지 않는 경우에는 소수주주에 의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음 (상법 제412조의 3).

(4) 법원

소수주주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검사인을 선임한 경우 법원은 그 검사인으로부터 검사결과를 보고받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대표이사에게 주주총회의 소집을 명할 수 있음 (상법 제467조).

이 경우 따로 이사회 소집결의가 필요 없으며, 명을 받은 대표이사는 지체 없이 총회를 소집하여야 함.

다. 소집시기와 소집지

(1) 소집일시의 결정

상법상 주주명부의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결정시기의 제

한(상법 제354조 제2항·제3항) 때문에 정기주주총회는 매결산
기 후 3월 내에 개최하여야 하며

특히, 상장회사는 사업년도 경과 후 90日 이내에 주주총회
에서 확정된 재무제표를 첨부한 사업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
와 증권거래소에 제출하게 되어 있어 이 기간 내에 정기주주
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관리대상종목
으로 편입되고, 상장폐지요건에 해당됨 (유가증권 상장규정 제
75조, 제80조).

- ※ 총회일자를 토요일 오후나 공휴일 또는 일요일로 하는 것은
주주에게 불편을 줄 수 있고, 개최시간도 너무 이르거나 늦
으면 역시 소집절차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 되어 결의
취소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참고판례 : 소집장소와 시기의 변경>

소집통지한 시간보다 현저히 지연되어 개최되거나, 참석주주들
에게 충분히 주지시키지 않고 회의장소를 변경함은 불공정하므
로 결의취소의 사유임(대법원 2003. 7. 11판결, 2001다45584: 국
민은행 임원선임 사건).

(2) 소집지와 장소의 결정

소집지는 정관에 규정이 있으면 그 地에서, 정관에 다른 정
함이 없으면 본점이 소재하고 있는 시, 군, 특별시·광역시의
구 또는 이에 인접한 地에서 소집하여야 함(상법 제364조).

- ※ 특별시와 광역시는 별도의 자치구를 두고 있으나, 본점 소재
지의 표시로서는 서울특별시 또는 ○○광역시로 표시하는
것이 실무적인 관행으로 정착되고 있음(상장회사 표준정관
제3조 제1항).

※ 소집지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 경우는 물론, 소집장소가 회의장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절차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것이 되어 결의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음.

라. 회의의 목적사항

상법이나 특별법, 또는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되고 있으며 이는 크게 보고사항과 결의사항으로 구분할 수 있음.

(1) 보고사항

주주총회의 심의를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소집 통지서에 결의사항에 앞서 기재하고 있으나(감사보고·영업보고), 회사합병의 보고와 같이 이 보고를 마쳐야만 합병등기가 가능한 경우처럼 비록 보고사항이지만 반드시 회의목적사항에 기재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음.

(2) 결의사항(부의안건)

주주에게 통지된 회의의 목적사항은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사항의 범위를 한정함. 즉, 총회에서 출석주주가 전원 찬성하더라도 소집통지서에 기재되어 통지·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결의할 수 없으며

통지·공고되지 않은 의안에 대해 결의한 경우에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더라도 결의취소의 원인이 됨.

여러 개의 의안이 있을 때에는 순번을 붙이는 것이 관례로서 이 순번에 따라 의안을 상정, 심의하게 됨.

※ 상장회사 주주총회에서 이사 또는 감사를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지하거나 공고한 후보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함(상법 제542의5). 만일 이를 위반하여 이사 또는 감사를 선임한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상법 제635조의 제1항 제25의2호)

(3) 의안의 배열순서

중요도에 따라 의안을 심의하는 것이 원칙임.

※ 정기주주총회의 경우 ① 제○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 ② 정관변경의 건 ③ 이사 선임의 건 ④ 감사 선임의 건 ⑤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⑥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의 순으로 배열토록 하고, 그 외에 합병승인 또는 보고의 건이나 영업양도, 자본감소, 감사인 보고의 건 등이 있을 때에는 적당한 곳에 넣어 처리함.

※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감사의 선임 또는 감사의 보수 결정을 위한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선임 또는 이사의 보수 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함(상법 제542조의12 제5항). 만일, 이에 위반하여 의안을 별도로 상정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상법 제635조)

마. 주주제안권

주주총회 참가의욕을 높이고 주주의 의견을 총회에 반영시키며 회사와 주주간 또는 주주 상호간의 의사와 소통을 꾀하기 위하여 주주에게 주주총회에서 심의될 의안의 제안권을 부여하는 제도임.

(1) 제안자의 자격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 주식을 가진 소수주주가 제안권을 가짐(상법 제363조의2). 數人の 주주가 공동으로 요건을 구비하는 것도 가능

다만,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제안권 행사시점부터 소급하여 6월 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0분의 10(최근 사업년도말 자본금 1,000억원 이상인 법인은 1,0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자로 지분요건을 완화하고 있음(상법 제542조의6 제2항).

※ '6월간 보유'의 기산점 : 주주제안의 청구일(서면을 제출한 날)로부터 역산하여 주식취득일까지 6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하는 의미로 해석됨.

(2) 제안의 내용

주주제안권은 의제제안권(이사선임의 건 등 회의의 목적사항에 새로운 목적사항을 추가할 것을 요청)과 의제제안권(○○○를 이사로 선임한다 등 의제의 구체적 내용을 제출하여 이를 총회소집의 통지나 공고에 기재하여 줄 것을 청구)을 포함하며,

이러한 주주제안의 내용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지 않는 것이어야(상법 제363조의2 제3항) 할 뿐 아니라

주주의 제안권 행사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은 제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상법시행령 제5조).

①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100분의 10 미만의 찬성밖에

언지 못하여 부결된 내용과 동일한 의안을 부결된 날부터 3년 내에 다시 제안하는 경우

② 주주 개인의 고충에 관한 사항

③ 주주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소수주주권에 관한 사항

④ 임기 중에 있는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상법 제542조의2제1항의 상장회사)

⑤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 주주총회의 의안으로 상정할 실익이 없거나 부적합한 사항 또는 제안이유가 명백히 허위이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항

(3) 제안의 절차

주주제안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주총회일 6주전까지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이사에게 제안하여야 함(상법 제362조의2 제1항).

만약 주주제안의 청구가 늦어서 그 청구일과 총회일사이에 6주의 기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주주제안은 부적법하므로 이사는 이를 받아들일 의무가 없음.

(4) 제안의 효과

주주로부터 적법한 주주제안이 있는 때에는 이사회는 이를 채택하여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상정하여야 하고 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에 이를 기재하여야 하며

제안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함(상법 제362조의2 제3항).

(5) 부당거절의 효과

주주가 청구한 의안의 요령을 소집통지나 공고에 기재하지 않고 이에 대응하는 회사의 의안의 요령에 관하여 결의가 이루어진 때 또는 주주에게 의안에 관한 설명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서 결의취소의 사유가 됨.

주주가 요구한 적법한 의제를 채택하여 주주총회에 상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른 결의는 유효하고 주주는 이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며 이사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음(상법 제635조 제19호의 3).

바.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의 설정

(1) 의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방법(상법 제354조 제1항)으로 다음 2가지의 방법이 있음.

- ① 주주명부 폐쇄 : 일정기간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는 방법
- ② 기준일 설정 :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에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보는 방법

※ 통상 상장회사 실무에서는 위의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하며 신문 공고시 「주식 명의개서 정지공고」로 표시함.

이러한 방법은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한 경우에 이용되며, 그 밖의 경우에 신주의 발행, 준비금의 자본전입(무상증자),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등에도 이용됨.

(2) 결정기관

총회를 소집할 권한을 갖는 이사회가 결정하며 대부분의 회사는 정관에 이를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지만(상장회사 표준정관 제13조 제3항), 이러한 정관조항이 없더라도 동일함.

(3) 이용의 행태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반드시 주주명부를 폐쇄하거나 기준일을 설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주주의 변동이 자주 일어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총회 소집뿐만 아니라 유·무상증자 등에 있어 의결권 및 권리를 행사할 자를 확정하기 위해 이 제도의 활용은 절대적임.

※ 주주명부 폐쇄시점과 기준일 설정시의 실무상 관행 : 명의개서대행기관의 업무마감시각을 기준으로 주주명부를 폐쇄하는 관행에 따라 폐쇄일도 명의개서가 가능하게 되므로 기준일을 주주명부폐쇄일 익일로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4) 기 간

주주명부를 장기간 폐쇄하는데 따르는 주주들의 권리행사상의 제약과 불편을 고려하여 3월을 초과하지 못함(상법 제354

조 제2항).

※ 종전 주주명부 폐쇄기간이 통상 결산기 익일부터 1개월 정도로 되어 있었으나, 2주간 정도로 단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정보처리기술 발달에 힘입어 실무적으로는 2주 보다 더 단축되고 있음.

상법상으로도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 전환청구는 가능(상법 제349조 제3항 폐지)하나 전환청구에 의해 발행된 주식은 당해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는 금지됨.

(5) 공 고

주주명부의 폐쇄 또는 기준일을 정한 때에는 주주들이나 이의 양수인, 채권자 등에게 명의개서나 질권등록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기 위하여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함(상법 제354조 제4항).

결산을 위한 정기주주총회의 주주명부 폐쇄기간을 정관에 정해 놓고 있는 경우(상장회사 표준정관 제13조 제2항)에는 주주명부 폐쇄 공고의무가 없음(상법 제354조 제4항 단서).

※ 그러나, 실무에서는 이 경우에도 대부분 주주명부 폐쇄공고를 내고 있는데 이것은 순전히 주주에 대한 서비스 차원이며, 이것을 생략했다고 하여 정기주주총회의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님.

사. 소집통지와 공고

회사가 총회 소집의 통지나 공고를 게을리하거나 부적법하게 한 때에는 소집절차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것이 되어 결의취소의 소의 사유가 되고, 이사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

태료가 부과됨(상법 제635조 제1항).

(1) 소집통지와 공고

주주에게 출석의 기회와 준비의 시간을 주기 위하여 기명주주에게는 소집의 통지를, 무기명주주에게는 소집의 공고를 하여야 하며(상법 제363조).

통지의 대상이 되는 기명주주는 주주명부 폐쇄 당시 또는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상의 의결권있는 주주를 가리키며 회사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의 주소로 통지하면 면책이 됨(상법 제353조).

※ 소집통지는 발신주의를 취하는 관계로 발신일시만 증명할 수 있다면 우편기관의 과실에 의한 불도달에 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음.

통지와 공고의 기간은 기명주주에 대하여는 회일의 2주간 전에 소집통지를 발송하여야 하고 무기명주주에 대하여는 회일의 3주간 전에 소집공고를 하여야 함.

※ 회일의 2주간 : 통지의 발송일과 회일 사이에는 적어도 2주일의 간격이 있어야 함.

(2) 소집 통지·공고의 생략

상호보유주식등 의결권없는 주주에 대하여는 소집의 통지나 공고를 요하지 아니하며 (상법 제363조)

주주명부상 주소지로 보낸 주주총회 소집통지서가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하고 반송되어 오는 경우에는 더 이상 소집통지를 할 필요가 없음(상법 제363조 제1항 단서).

※ '3년간'의 계산은 최초로 도달되지 아니한 통지의 발송일로

부터 최후로 도달하지 아니한 통지의 발송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하며, 발송에 대한 입증책임이 회사에 있으므로 회사는 3년간 반송된 통지서를 보관할 필요가 있음.

다만, 주주총회 소집통지 이외의 주주에 대한 통지는 3년간 도달되지 않더라도 생략할 수 없음.

(3) 소집 통지 · 광고의 내용

통지 또는 광고에는 총회의 일시·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상법 제363조 제2항)

결의사항이 ① 정관의 변경(상법 제434조 제2항), ② 자본의 감소(상법 제438조 제2항), ③ 합병계약서의 승인(상법 제522조 제2항), ④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 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발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결정(상법 제513조, 제516조의2 제5항) 등 중요한 사항일 때에는 그 의안의 요령(의안의 중요한 내용)도 기재하여야 함(상법 제433조 제2항, 제522조).

총회는 소집의 통지·광고에 기재한 회의의 목적사항에 한하여 심의·결의할 수 있으며 총회의 결의로 의제를 삭제하거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할 수는 있으나 새로운 의안을 추가할 수는 없음.

특히, 상장회사의이 주주총회 소집통지 또는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통지·광고하거나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및 본·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여야 함(상법 제542조의4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제5항).

① 사외이사 그밖의 비상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이사회 의

안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가 보수에 관한 사항,

② 상법 제542조의9제3항에 의한 해당 회사와 최대주주 등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단일거래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인 거래 또는 해당 사업연도 중에 특정인과의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

③ 영업현황 등 사업개요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별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참고서류금감위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참고서류)

상장회사 주주총회의 의안 중 이사 및 감사 선임에 관한 의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 및 감사후보자의 성명·약력·추천인·후보자와 최대주주와의 관계·후보자와 당해 법인과의 최근 3년간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함(상법 제542조의4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또한 사전에 통지하거나 공고한 후보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함(상법 제542조의5)

(4) 소집통지에 갈음한 공고

상장회사는 소액주주에 대해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공고로 갈음할 수 있음(상법 제542조의4 제1항).

① 소액주주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상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② 공고방법 : 정관의 규정에 따라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 공고에는 회일을 정하여 그 2주간 전에 하여야 하고, 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상법 제542조의4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 실무상 대부분의 회사가 주주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모든 주주에게 서면통지를 하고 이에 더하여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내고 있음.

(5) 소집의 철회·변경

주주총회 소집 통지·공고 후에도 소집 자체를 철회할 수 있고, 회의의 목적사항의 일부를 철회할 수 있으며, 총회의 회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이를 위해서는 소집의 경우에 준하여 통지·공고하고 그 통지는 전에 통지된 회일보다 전에 도달하여야 함.

주주총회 일자를 변경하는 통지나 공고는 변경된 회일의 「2주간전」이라는 시간적 간격을 준수하여야 함.

그러나,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인한 시간·장소의 변경은 소집 전에 주주들에게 충분히 주지시키면 허용된다고 보나 총회 개최시각을 앞당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

(6) 소집절차를 결한 총회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결한 때에는 그 총회에서의 결의는 취소의 대상이 되거나 부존재의 사유로 됨. 즉, ① 소집통지한 일시·장소에서의 주주총회가 산회된 후 같은 날 다른 시각에 다른 장소에서 일부 주주들만이 모여서 한 결의는 효력이 없으며(부존재 결의), ② 주주총회가 유회된 후 동일장소에서 동일자 다른 시간에 개최된 총회의 결의는 부적법함(부존재 결

의).

대표이사가 총회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해태하거나 불공정한 통지 또는 공고를 한 때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으며(상법 제635조 제1항 제2호)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법정의 소집절차가 결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유효한 총회로 인정됨.

- ① 전원출석총회(법정의 소집절차에 의하지 않고 주주 전원이 총회의 개최에 동의하고 출석하여 이루어진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
- ② 총 주주가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한 경우
- ③ 어느 주주가 통지를 받을 권리를 사전에 포기하는 경우

5.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1) 개요

주주총회의 결의에 어떠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결의의 효력을 둘러 싸고 경영권의 쟁탈과 주주간의 이해대립 등의 분쟁이 발생하게 됨.

주주총회의 결의의 하자를 다룰수 있는 소의 방법으로는 하자의 경중에 따라 결의취소의 소(상법 제376조), 결의무효확인 소(상법 제380조), 결의부존재확인 소(상법 제380조) 및 부당결의취소 변경의 소(상법 제381조) 등이 있음.

(2) 소의 방법

1) 결의취소의 소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주주이사 또는 감사가 그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소임.

※ 결의취소의 사유(결의에 형식적 하자 또는 경미한 내용적 하자)

① 소집절차의 위법

- 통지상의 하자(일부 주주에 누락, 미통지기간 미준수, 서면의 요건등 통지방법을 지키지 못한 경우, 장소/시간을 불공정하게 정한 경우 등)
- 이사회 소집결의의 하자(소집결의 이사회 효력상 다툼의 소지)
-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한 소집 등

② 결의방법의 위법

- 결의요건의 위반(보통결의 및 특별결의)
- 결의내용의 정관 위반
- 목적사항 이외의 결의
- 주주 아닌 자 또는 의결권이 제한된 주주의 결의 참가 등

③ 불공정한 의사진행

- 부당하게 주주발언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키는 경우
- 총회꾼을 동원하는 등 불안정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결의

하는 경우

·결의에 반대가 예상되는 주주의 출석을 지연시키고 이를 틈타 안건을 가결시킨 경우(참고판례 : 대법원 1996.12.20 판결, 96다39998)

·의장의 무자격 등

<참고판례 : 의장의 무자격>

대표이사나 기타 정관에 기재된 의장이 아닌 자가 의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한 경우에 관해 판례는 정당한 의장을 제지하고 주주 중 1인이 스스로 의장이 되어 진행한 사건에서는 취소사유가 된다고 하였으나(대법원 1977. 9.28 판결, 76 다 2386), 특별한 사정이 있어 정관상의 의장이 아닌 임원이 의장이 되어 진행한 사건(서울고법 1964.2.7판결, 63나480) 및 의장이 부당하게 사회를 거부하여 주주끼리 임시로 의장을 선출하여 진행한 사건(대법원 1983.8.23 판결, 83도748;同 2001.5.15 판결, 2001다12973)에서는 적법하다고 함.

<참고판례 : 불공정한 의사진행>

「... 회사의 분할과 그에 따른 실질적인 감자라는 중대한 효과를 가져오는 안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가지는 소액주주들로서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자신의 입장과 의견을 개진하고 표결에 참가함으로써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회사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있어 실질적으로 유일하게 보장된 권리로서 소수자의 이와 같은 유일한 권리는 엄격히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비록 신청인들을 비롯한 소액주주들이 의안의 내용이나 의사진행과정에 불만을 갖고 단상을 점거하는 등 실력으로 주주총회의 결의를 방해하고 있었고, 피신청인 회사측이 의결정족수를 충족할 정도의 의결권을 이미 위임받은 상태에 있어 정

상적인 토론과 표결절차를 거쳤더라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의 결과가 나왔을 것임이 쉽게 예상된다 하더라도, ... 소액주주들의 이러한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사전 또는 회의 과정 중에 의견을 조정하고 끈기 있게 설득과 대화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회의를 연기하거나 회의시간을 연장하여 발언과 의견제시 및 표결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 없이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안건 처리를 선언한 ... 위 주주총회의 결의는 그 결의방법이 현저하게 불공정한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인 2000.4.28決定, 2000카합427).

2) 결의무효확인의 소

결의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이유로 하여 그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임.

※ 무효확인의 사유

- 결의에 실제적인 하자, 즉 결의자체가 위법한 경우
- 결의내용이 주주총회 결의사항이 아니거나 사회질서나 강행 법규에 반할 때
- 불공정한 결의 특히 다수결의 남용(과다한 이사의 보수, 매우 불리한 영업 양도 등)

3)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결의가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여 아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소임.

※ 부존재 확인의 사유(결의취소의 사유에 해당하나 그 정도가

지나친 경우)

- ① 이사회 결의 없는 주총 소집
- ② 소집권한 없는 자의 주총 소집
- ③ 대부분의 주주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 ④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대표이사를 포함해 이사 전원이 총회에 불참한 경우
- ⑤ 유효하게 회의가 종료한 후 일부의 주주들만이 모여서 결의를 한 경우
- ⑥ 주주총회 개최 없이 의사록만 작성한 경우

<참고판례 : 정족수에 미달한 주총결의>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하자가 있는 때에도 그 하자가 주주총회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경우에만 결의부존재의 사유가 되고, 그 이외의 경우의 하자는 단지 결의취소의 사유에 불과한 것인바, 주주총회가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어 개최된 이상 정족수에 미달한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하자는 결의취소의 사유에 불과하고, 결의부존재의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임(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32768, 32775, 32782 판결 참조).

4) 부당결의의 취소, 변경의 소

주주가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경우에 자기에게 현저하게 부당한 결의가 이루어졌고 만일 그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였더라면 위 결의를 저지할 수 있었을 때에 그 결의의 취소 변경을 주장하는 소임.

※ 현저하게 부당한 결의 : 결의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지 않아도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해하는 것을 말함.

[상법상의 주주총회 결의관련 소송]

구분 \ 종류	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	부 존 재 확인소송	부당결의취소· 변경의 소
근거조문	§376①	§380	§380	§381①
訴의원인	절차상 하자 (절차와 방법이 법령·정관에 위배), 결의내용이 정관 위배	내용상 하자 (결의 내용이 법령·사회질서·주식 회사 본질 위반)	절차상 하자 (취소 원인이 지나쳐 결의가 존재함고 보기 곤란)	내용상 하자 (특별이해 관계자를 배제하고 결의한 내용이 현저히 부당)
제소권자	주주.이사.감사	訴인이 있는자	訴인이 있는자	의결권 행사 못한 특별 이해관계자
제소기간	결의일부터 2월	없음	없음	결의일부터 2월
법원의 재량기각	가 능	불 가 능		

※ 결의의 불완전 또는 불발효

그 결의 자체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으나 결의 단독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여기에 다른 결의나 법적 행위가 추가되어야만 비로서 완전한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며 어느 종류 주주의 우선권을 침해하는 결의가 일반주주총회에서 가결된 경우 다시 그 종류 주주의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를 얻어야만 일반주주총회의 결의가 완전한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됨.

(3) 사정판결

주주총회의 결의에 흠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결의가 취소되

는 것은 아니며 상법에서는 위와 같은 규정을 두어 흠 있는 결의의 처리에 관해 법원에 재량을 부여하고 있음(상법 제379조).

따라서 총회에 경미한 하자가 있더라도 결의는 유효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가 많음.

(4) 부당한 소송에 대한 회사의 대응

결의취소의 소송 중에는 총회꾼이 악의적으로 제기하는 예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는 법원에 담보제공명령을 청구하여 대항할 수 있음(상법 제377조).

6. 총회의 의장

가. 의장의 선임

주주총회의 의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며 보통 정관에서 의장이 될 자를 정하고 있으나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총회에서 주주들이 의장을 선임하여야 함(상법 제366조의 2).

의장이 불신임결의를 받거나 직무를 포기한 경우에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다음 순위로 의장이 될 자가 이에 임하고 그러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임하여야 하며

소수주주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스스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한 경우(상법 제366조 제2항)에는 총회에서 의장을 별도로 선임하는 타당하다고 보며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총회를 소집한 경우(상법 제467조 제2항)에는 정관상의 의장

이 의사를 진행하여야 할 것임.

나. 의장의 자격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선출하면 됨.

다. 의장의 권한(질서유지권)

의장은 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총회장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동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이의 명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있음.

→ 상법 제366조의2(총회의 질서유지), 상장회사 표준정관 제22조(의장의 질서유지권), 상장회사 표준주주총회운영규정 제11조(유해물 소지금지) 제14조(의장의 질서유지권) 제15조(퇴장명령)

의사진행의 원활을 위하여 의장은 주주의 발언이나 회수도 제한할 수 있다고 보나 가부동수인 경우에 결정권은 없음.

※ 주주에 대한 이익공여의 금지

상법에서는 회사는 누구에게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이익을 회사에 반환하도록 하고 있음(상법 제467조의2 제1항, 제3항). 이는 총회권에 의한 회사에 일정한 이익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이 요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

을 경우 의사의 진행을 방해하는 총회꾼을 봉쇄하기 위한 제도임.

7. 총회의 개최

가. 회의장 준비

총회장의 설치·운영은 총회를 소집한 회사(대표이사)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대표이사는 총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 선정 및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

(1) 회의장 선정의 기준

정관상 소집지 내에 있어야 하고, 주주들이 참석하는데 교통상으로 불편하지 않고 찾기에 어려움이 없는 장소라야 함.

주주의 수가 많은 회사라 하더라도 통상 주주 전원이 출석하지는 않으므로 출석이 예상되는 주주 수를 고려하여 회의장을 준비토록 함.

(2) 회의장의 배치·정리

회의장 외부(건물의 현관, 승강기 앞 등)에 「○○주식회사 제○○기 주주총회」를 명시하며 필요에 따라 회의장에 이르기까지 안내 표시물을 설치하고 접수석은 회의장 입구에 설치토록 함. 다만, 회의장 입구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건물출입구 등에 접수석을 마련할 수 있음.

회의장 내는 의장석, 임원석(이사 및 감사), 보고석(사회석),

주주석 및 기록, 방청석 등으로 구분하여 좌석을 배치하고 정면 한편에는 의사일정을 게시토록 함.

기록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녹음장치를 준비하고 마이크도 회의진행에 불편이 없도록 충분히 준비함(상장회사표준주주총회 운영규정 제3조).

(3) 회의장의 경비

총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장의 권한으로 관할 경찰서 또는 파출소에 경찰관의 임석을 요청하며

경찰관의 회의장 출입에 대하여 주주의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의 요청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고지토록 함.

사내 경비조를 편성하여 의장의 퇴장명령 및 회의장 내 혼란사태 발생에 대비토록 함(상장회사표준주주총회 운영규정 제4조).

(4) 담당조의 편성·운영

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접수, 안내, 마이크, 경비 등의 업무별 담당조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각 조의 인원은 총회의 규모와 상황에 따라 결정토록 함(상장회사표준주주총회 운영규정 제4조).

사전에 접수요령, 총회운영요령 등 각 업무에 필요한 내용을 숙지토록 함.

나. 의결정족수의 확보

상법에서는 주식이 널리 분산되어 있는 회사들의 경우 특히

상장회사에 있어서는 소액의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아니하여 갈수록 총회의 성립 자체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총회 성립을 위한 의사정족수를 두지 아니하고 출석한 주주들만으로 결의가 가능하도록 의결정족수만을 규정(상법 제368조 제1항, 제434조). 따라서 의사정족수를 두지 아니함으로써 총회 성립에는 여유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총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는 최소한 안전별 결의를 위한 해당 의결정족수는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사실상의 의사정족수 : 상법에서 명문으로 의사정족수를 두지는 아니 하였으나, 주주총회에서 결의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주식 수가 보통결의에는 총 발행주식 수의 4분의 1, 특별결의에는 총 발행주식 수의 3분의 1이 필요하므로 이를 사실상의 의사정족수라고도 함.

※ 총회의 의결정족수의 충족 여부를 산정하는 경우 발행주식 총수에 산입하지 않는 '의결권 없는 주식'은 ① 무의결권 우선주(상법 제370조), ②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상법 제341조), ③ 자회사가 가진 모회사주식(상법 제342조의 2), ④ 상호주(상법 제369조), 기타 특별법에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외에 ⑤ 감사 선임시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상법 제409조 제2항)과 ⑥ 특별 이해관계인이 가지는 주식(상법 제368조 제4항)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음.

다. 이사·감사 등의 출석 및 참석

(1) 이사·감사·감사인인 출석

이사·감사는 비록 주주총회의 구성원은 아니지만 주식회사의 기관으로서 당연히 총회에 출석할 것이 예정되어 있음.

일반적으로 대표이사는 총회의 의장을 맡으므로 당연히 그 출석이 예정되어 있고, 다른 이사들도 보고나 의안의 설명을 위해서 출석할 것이 예정되어 있음.

감사도 감사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 당연히 출석하여야 함. 실무에서는 사정상 감사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감사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감사업무담당부서장 등이 감사보고서를 대신 낭독하는 경우가 있음.

이사·감사는 주주총회의 구성원이 아니므로 그 출석 여부는 총회의 성립에 원칙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나, 불출석으로 인하여 주주에 대한 설명, 답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결의방법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것이 되어 결의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음.

외부감사인(또는 소속 공인회계사)은 이사의 부정이나 법률·정관에 위반된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때 주주총회에 이를 보고해야 하며, 주주총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주주의 질문에 답변하여야 함(외감법 제10조, 제11조). 그러나 외부감사인의 보고의무는 반드시 구두상의 보고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총회의 요청이 없는 한 주주총회에 반드시 참석할 의무는 없음.

실무상 외부감사인이 주주총회에서 출석하여 보고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총회에 출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음.

(2) 법률고문의 참석

주주총회는 법률고문에 대한 조언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회의장에 법률고문을 참석시키는 것이 바람직함(상장회사표준주주총회 운영규정 제9조 제2항).

(3) 공증인의 참석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중 등기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 신청시에 반드시 주주총회 의사록을 그 신청서에 첨부토록 하고 있음(상업등기법 제79조 제2항).

첨부할 의사록은 반드시 공증인의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공증인의 인증을 받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공증인을 결의장소에 참석시켜 결의절차와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함.

그렇지 아니하면 그 결의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자, 또는 그 대리인이 공증인 앞에 나아가 위의 사실에 관한 진술을 해야 하는 등 번거로우므로(공증인법 제66조의2 제3항) 총회장에는 가급적 공증인을 출석시켜 의사록에 그의 인증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상장회사표준주주총회 운영규정 제9조 제3항).

라. 출석주주의 확인 및 보고

(1) 출석주주등의 확인

총회에 참석하는 주주는 회사에서 총회 소집통지시 첨부하

여 송부한 참석장 또는 의결권행사서 용지(서면투표제를 채택한 경우)를 지참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이 직접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주주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에 의해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음.

1) 본인 출석의 경우

회사에서 송부한 참석장 용지를 지참한 자는 정당한 주주로 간주하고, 참석장을 지참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확인절차(Ⅰ)를 거쳐 주주로 인정된 자에 한하여 입장토록 함(상장회사 표준주주총회운영규정 제5조).

※ 확인절차(Ⅰ) : 출석자에게 성명, 주소, 주식수 등을 고지하게 하고 주주명부와 대조하여 주주임을 확인한 후, 주민등록증 등 공적 서류를 통해 그 동일인 여부를 확인함.

서면투표를 채택한 경우 이미 의결권행사서를 회사에 송부한 자가 마음이 변하여 총회에 출석한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본인출석으로 간주하고, 의결권행사서 집계에서는 이를 제외토록 함.

이를 위해 의결권행사서 제출자는 주주명부에 표시를 하고 의결권행사서를 주주명부 순으로 편철하는 등의 자료정리방법이 필요함.

※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양수인에 대한 총회장 출입 여부
→ 총회장 출입 허가여부는 전적으로 회사에 달려 있으므로 회사는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양수인이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아님을 이유로 총회장 입장을 거부할 수 있음.

※ 개최시간 이후에 도착한 주주에 대한 출입통제 여부

→ 주주가 소집통지서에 기재된 총회 개최시간 이후에 도착하였다고 하여 총회의 의사진행이 방해되는 등 질서를 현저하게 문란하게 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회사는 그 주주의 출입을 통제할 수 없다고 봄.

※ 상습적으로 난동을 부린 주주의 출입통제 여부

→ 어떤 주주가 이전의 주주총회에서 수차례 난동을 부려 총회의 질서를 현저하게 문란케 한 경력이 있다 하여도 회사는 이를 이유로 하여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황을 미리 예단하여 그 주주의 총회장 입장을 통제할 수는 없다고 봄.

2) 대리인 출석의 경우

회사에서 송부한 위임장을 지참한 자는 주주 본인의 기명날인이 있으면 정당한 대리인으로 간주토록 함.

임의로 작성한 위임장을 지참한 자에 대하여는 확인절차(II)를 거쳐 정당한 대리인 여부를 판단토록 함(상장회사표준주주총회 운영규정 제6조).

※ 확인절차(II) : 주주 본인의 자격요건 및 출석 대리인 본인에 대한 신분증의 확인 절차 외에 위임장에 날인된 주주인감이 회사에 신고된 인감이거나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동일한지의 여부를 확인함.

실제로 주주총회장에서 주주의 인감까지 일일이 대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상장회사에 있어 실질주주의 경우는 회사에 제출한 인감조차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 인감대조는 사실상 생략되고 있음.

그러나, 경영권 분쟁이 있거나 의안의 찬반에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투표에 의한 표결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주총

회장에서 엄격한 주주 확인절차(I)(II)를 시행하여야 함.

〈참고판례 : 의결권의 위임이 부당한 사례〉

주주의 의결권의 대리행사로 말미암아 주주총회의 개최가 부당하게 저해되거나 혹은 회사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염려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으며, 주주총회에 참석한 의결권 대리인들이 대표이사의 주주총회장에서의 퇴장 요구를 거절하면서 고성과 욕설 등을 사용하여 대표이사의 주주총회의 개최, 진행을 포기하게 만든 경우, 그와 같은 의결권 대리행사의 위임은 위세를 과시하여 정상적인 주주총회의 진행을 저해할 의도이고 주주총회에서 그 의결권 대리인들이 요구한 사항은 의결권 대리행사를 위한 권한 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대표이사는 그 대리인들이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것을 적법하게 거절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업무 방해죄가 성립함(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2917 판결)

(2) 출석주식 수 등의 보고

총회는 정해진 일시·장소에 결의성립에 필요한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 및 이사가 출석하고 의장이 개회를 선언함으로써 성립함.

총회의 소집자는 총회의 개회시각부터 폐회시각까지 계속하여 주주의 출석상황을 확인하여야 하며

예정된 개회시각이 되면 의장은 개회를 선언하고 본인출석과 위임출석을 일괄하여 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 및 총주주 수와 의결권있는 주식총수 및 그 주주 수를 발표하고 총회 당일 출석한 의결권있는 주주 수와 그 의결권 수도 보고함.

※ 본인출석에는 참석장 또는 의결권행사서 제출에 의한 출석 및 증권에탁결제원의 행사주식수가 포함되고, 위임출석에는 위임장 용지 또는 포괄위임장에 의한 대리출석이 포함됨.

원칙적으로 총회에 참석한 주주 수 대신 의결권을 가진 참석주식의 수만을 보고하더라도 의사진행에는 결격사유가 없다 하겠으나, 참석주주수를 보고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음.

마. 보고사항의 처리

(1) 감사(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

감사결과에 대한 감사록의 작성을 의무화하고(상법 제413조의2), 감사보고서의 기재사항을 법정(상법 제447조의4)하여 주주총회에 제출토록 하고 있음.

감사보고 시에는 서면으로 되어 있는 감사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낭독할 것이 아니라 감사결과만을 간략히 보고하고 여기에 상법 제413조에서 요구하는 총회 제출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조사결과를 추가하여 언급하는 것이 바람직함.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에서는 주주총회에 감사보고를 할 경우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 하도록 함.

(2) 감사인의 감사보고

감사인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사의 직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고 주주총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는 의장 또는 대표이사의 요청에 의하여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주주의 질문에 답변하여야 함(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3) 이사의 영업보고

이사(대표이사)는 매 결산기에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상법 제447조의2),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함(상법 제449조 제2항).

영업보고서 기재사항 : 사업년도 중에 있었던 영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기재토록 하고 있음(상법시행령 제5조).

(4)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회사는 매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4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함. 회사가 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인선임위원회를 설치할 필요 없음)의 승인을 얻어야 함(외감법 제4조).

다만, 상장회사는 직전 사업년도에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한 회사가 속한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에 의해 선임된 회계법인의 외부감사를 받아야 함.

회사가 감사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선임한 사업년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최근 주주명부폐쇄일 기준주주에게 서면·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외감법 제4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6항).

(5) 이익에 의한 주식소각 보고

상법상 회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이익에 의한 주식소각을 할 수 있으나(상법 제343조의2) 상장회사는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는 뜻을 정관에 정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음(자본시장법 제165조의3)

주식을 소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이사회에서 결의하여야 하며, 결의 후 취득한 주식에 한하여 소각할 수 있음(자본시장법 제165조의3 제2항).

- ① 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총수
- ② 소각하기 위하여 취득할 주식가액의 총액
- ③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기간. 이 경우 그 기간은 이사회 결의 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주주총회일 이전이어야 함.

다만, 2001년 4월 1일 현재 증권거래법에 의해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보유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한 분에 대하여 소각이 가능함 [증권거래법 부칙(2001.3.28) 제16조 및 자본시장법 부칙(2009.2.3) 제6조 참조].

위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한 경우에는 그 소각의 결의 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주주총회에 이사회에서 결의한 사항과 주식을 소각한 뜻을 보고하여야 함.

(6)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 보고

자산총액 2조원이상 상장회사는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그 특수관계인 포함), 특수관계인과 일정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에 승인을 받고 정기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함(상법 제542조의9)

승인대상 거래내용(상법시행령 제14조 제6항 및 제7항)

- ① 단일 거래규모가 최근 사업년도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 이상인 거래
- ② 당해 사업년도 중에 특정인과 당해 거래를 포함한 거래 총액이 최근 사업년도말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5% 이상이 되는 경우의 당해 거래

정기주주총회 보고사항(상법 제542조의9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8항)

- ① 거래의 목적
- ② 거래의 상대방
- ③ 거래의 내용, 일자, 기간 및 조건
- ④ 당해 사업연도 중 거래 상대방과의 거래유형별 총거래 금액 및 거래잔액

이사회에서 거래총액을 승인하고 그 승인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행하는 거래는 그 거래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음(상법 제542조의9 제5항).

8. 총회의 의사진행

가. 의사진행의 일반원칙

총회의 의사진행은 상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회의의 관행과 일반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회의의 중요한 원칙으로 ① 발언자유 원칙, ② 정족수 원칙, ③ 일동의(일의제) 원칙, ④ 일사부재의 원칙, ⑤ 회기불계속 원칙, ⑥ 다수결 원칙 등이 있음.

나. 의사진행자

의장은 주주총회 의사진행을 하는 자로서 의사정리권 및 질서유지권을 가지며 주주질문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담하며

의장은 민법상 회사와 위임에 준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의사를 진행하여야 함(민법 제681조).

의장이 부당하게 개회선언을 미루거나 폐회를 서두르는 경우, 찬반을 유도하는 경우, 특정 주주의 발언기회를 부당하게 봉쇄하는 경우에는 주주들이 의장을 새로이 선임하여 결의할 수 있다고 봄.

다. 의안의 상정, 토론, 표결

(1) 의사진행의 원칙

1) 발언의 허가 및 제한

의장은 의연한 태도로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주주의 질문, 의견표명과 동의의 제출과 이에 대한 임직원의 설명, 답변 등 장내의 모든 발언은 의장의 허가를 얻어야 함(상장회사표준주주총회 운영규정 제21조).

2) 발언의 허용시기 및 순서

주주의 질문 및 발언은 보고사항에 대한 보고와 각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끝난 후에만 접수하고 그 이전에는 어떠한 발언도 허용하지 않도록 함.

발언자의 순서는 ① 발언권을 요청한 순서, ② 이제까지 1회라도 발언한 자인지 여부, ③ 바로 직전의 발언자와 반대의견을 가진 자인지 여부를 참작하여 의장이 결정토록 함(상장회사표준주주총회 운영규정 제22조)

3) 발언의 제한 및 금지

의장은 정상적인 총회 진행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주주를 퇴장시킬 수 있으나(상법 제366조의 2 제3항), 주주 발언의 시간 또는 회수의 제한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러나, 발언의 시간 또는 횟수의 제한 보다 더 강한 퇴장 명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주의 발언시간 및 회수의 제한도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한 가능하다고 봄.

따라서, 요지없이 장황한 발언,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 등에 대하여는 적절하게 의사진행권을 발동하여 발언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으며(상장회사표준주주총회 운영규정 제24조)

의장의 허가를 얻지 아니한 발언, 장내를 혼란스럽게 하는 발언뿐만 아니라 의장의 허가를 얻은 발언이라도 연설조의 장광설 등이나 의사방해 의도가 명확한 경우에는 이를 중지시키도록 함(상장회사표준주주총회 운영규정 제25조).

4) 질서문란자에 대한 퇴장명령

출석주주가 현저하게 질서를 문란시켜 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장은 퇴장명령도 불사하며 만약 퇴장명령을 받은 자가 스스로 퇴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비 등을 시켜 강제 퇴장시키도록 하고 있음(상법 제366조의2 제3항, 표준주주총회 운영규정 제15조).

실제 퇴장을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통상 어느 정도 경고발언을 한 후 그래도 의장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 퇴장을 명하게 되나, 폭력행위 등을 행한 경우에는 경고 없이 바로 퇴장시킬 수 있음.

그러나, 퇴장조치는 주주의 의결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그 주주로 인해 정상적인 총회의 의사진행을 기대할 수 없을 경우와 같은 상황에서 가장 최후의 수단으로서 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2) 발언의 종류에 따른 진행방식

1) 주주의 질문

주주질문권은 상법상 근거규정은 없으나, 주주권에 내재하는 주주의 권리이므로 주주는 당연히 총회에 상정된 회의의 목적사항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회사가 집행한 업무와 재산상태

등에 관해서도 질문할 수 있고 이사는 이에 대해 설명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

그러나, 주주의 질문이 다음에 해당하는 것일 때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음(표준주주총회 운영규정 제27조).

- ① 회의의 목적사항에 관한 것이 아닐 경우
- ② 설명을 함으로써 주주 공동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하는 경우
- ③ 설명을 하기 위하여 조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
- ④ 질문이 중복되는 경우
- ⑤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특정 임원에 대하여 질문이 있더라도 답변자는 의장이 결정하며, 감사에 대한 질문은 상근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상장회사표준주주총회운영규정 제26조).

2) 주주의 찬반의견 표명

총회 의안 및 각종 동의에 관한 찬반의견 표명도 적정한 시간 내에서만 이루어지도록 함.

찬반토론은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찬성, 반대의 의견이 번갈아 나오도록 발언권을 부여함(상장회사표준주주총회 운영규정 제22호).

원안에 대한 반대의견이라고 하여 발언의 기회를 봉쇄하거나 발언을 제한할 필요는 없음(공연히 편파적인 의사진행을 함으로써 불공정 시비를 야기하는 것은 피하도록 함).

찬성의견 또는 반대의견은 의안 표결시 찬성 또는 반대주식

수로 나타나므로 의장은 발언자의 수보다 발언자가 갖고 있는
주식수를 고려하여야 함.

※ 실무에서 주주가 「동의」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도 사실상
찬성의견 또는 반대의견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의장
은 이를 혼동해서는 안 됨. 예컨대, 원안통과 동의는 찬성의
견에 불과하고 의안의 철회 동의는 의안의 심의 자체를 반
대하는 것으로 반대의견일 뿐이므로 이를 단순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으로 처리토록 함.

3) 주주의 동의

① 새로운 의안의 제출

검사인의 선임 동의(상법 제367조), 외부감사인의 출석요구
동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대하여는
이를 총회에 부의하고 표결에 의해 처리하며

기타 새로운 의안의 제출에 관하여는 위법한 제안으로 각하
토록 함(상장회사표준주주총회 운영규정 제29조).

② 수정안의 제출

수정동의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
법한 제안으로 각하토록 함(상장회사표준주주총회운영규정 제
28조 제1항, 제30조 제1호).

※ 수정동의 : 원동의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로서 원동의와 관련성을 가져야 함.
원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언제나 동시 상정하여 원안과 일괄
심의한 후 원안을 먼저 표결에 붙이도록 함(이 때에 원안이
찬성 다수로 가결되면 수정안은 자동 부결됨). 수정동의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부적법한 동의로서 각

하함.

- ③ 절차적 동의 중 총회의 의사결정을 요하는 ① 연기, 속행의 동의(상법 제372조) ② 감사인 선임(상법 제367조) ③ 외부감사인의 출석 요구(외감법 제11조) ④ 의장 불신임 동의는 총회에 부의하여 가부를 결정함(운영규정 제29조).

여타의 절차적 동의 예컨대 휴게, 토론종결 및 각종 의사진행에 관한 동의는 의장이 단독으로 처리하거나 총회의 의사를 물어 처리해도 무방함.

의장에 대한 불신임 동의를 제기된 경우에는 당해 의안에 대한 상정과 토론, 표결 후 불신임 동의를 가결된 시점에 의장에서 물러남. 만일 불신임 동의를 가결 후에도 당해 의장이 계속 주주총회를 진행하면 결의취소의 소의 대상이 됨.

의장이 어떤 의안에 대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것까지는 관계없으나, 그로 인해 불공정한 결의가 이루어질 경우 결의취소의 소의 사유가 됨.

(3) 의안의 상정

총회에서 심의 및 결의할 수 있는 의안은 소집통지·공고된 회의의 목적사항에 한정되며(상법 제363조 제2항, 제3항)

그와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의안을 심의·결의할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의 취소사유가 됨(상법 제376조).

의장은 각 안건을 순서별로 상정해야 하며 1의제 상정의 원칙에 따라 단일 안건씩 상정처리 하는 것이 원칙임.

그러나, 의안의 성격이나 내용이 상호관련성이 있는 경우,

예컨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승인의 건과 이익잉여금 처분 안 승인의 건과 같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은 그 이유를 말하고 동시 상정하여 심의도 병합할 수 있음(상장회사표준주주총회 운영규정 제39조).

(4) 의안의 토론

의안이 상정되고 제안설명이 있으면 본격 심의로 들어가며 대개 출석주주로부터 질문이나 의견을 청취하고 의장이 이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함.

이 때 의장은 의장으로서의 자격이 아니라 집행부의 수장(대표이사)으로서의 자격으로 답변하는 것임.

주주들의 질문은 찬반의사를 결정하기에 앞서 안전내용에 대한 보충설명을 요구하는 것이 보통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의제와 전혀 관계가 없는 질문을 하거나 단순히 자기의 견해를 표명하는데 그치는 사례가 많음.

의장은 이들의 질문내용을 메모를 해 두었다가 그에 알맞은 답변을 해야 하는데, 실무에 관한 사항으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관계 임원 또는 실무자의 도움을 얻어 답변하는 것도 가능하며 질문내용이 경영의 깊숙한 부분으로 공개답변이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언주주의 양해를 얻어 답변을 유보할 수 있고, 주주가 단순히 의견을 표명하는 성격의 질문에 대하여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로 답변을 끝낼 수도 있음.

토론의 종결은 의장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지만 어느 정도 성숙한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토론을 계속해야 될 의무 또한 의장에게 있다고 봄(상장회사표준주주총회운영규정 제33조).

(5) 표결방법 및 결과의 선포

1) 표결방법

실제로 사용되는 표결방법으로는 기립, 거수, 투표 등이 있으며(상장회사표준주주총회운영규정 제37조).

의안에 대한 가부 확인은 총회장에서 그 수를 헤아리지 않고서도 가능하도록 사전에 확인해 놓도록 함.

집중투표의 청구가 있거나(정관으로 이를 배제하지 않은 경우) 찬반의결수가 비슷하여 가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예상될 때에는 투표에 의한 표결에 대비하여 사전에 투표용지를 준비해 놓고 입장시 참석장 또는 위임장과 교환으로 투표용지를 교부토록 함.

2) 결과의 선포

토론이 끝나고 찬반의사가 분명해지면 의장은 표결에 부처 그 가부를 결정하며

표결결과의 선포, 즉 결의의 성립 또는 불성립을 명확히 행하여 후일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그러나 찬·반 주식수를 밝힐 필요는 없음(상장회사표준주주총회운영규정 제39조).

※ 통상 만장일치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분명히 반대의견이 있는데도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며, 그렇다고 찬성다수등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 보다 ‘출석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1 이상의 찬성(보통결의사항)’ 등과 같은 분명하고 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여 가결을 선포하고 의사록에 이를 남겨놓아야 함(상장회

사표준주주총회운영규정 제39조).

반대세력이 극히 일부의 소액주주들이거나 반대주주의 주식 수가 확인되어 의결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의 여부만을 묻고 바로 가결을 선포할 수 있음.

9. 총회 종료후의 절차

가. 의사록의 작성 및 통보

(1) 의사록의 작성

주주총회에서 예정된 의사를 전부 심의한 때에는 의장이 폐회선언을 함으로써 총회는 종료되며 그 후에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함(상법 제373조).

의사록은 결의에 관한 증거문서이며 의사록이 작성되지 않았다고 해도 성립된 결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며 그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에는 다른 증거에 의해 보충·변경될 수 있음.

1) 작성의무자

원칙적으로 총회의 진행책임을 맡은 의장에게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대표이사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2) 작성의 양식

의사록을 작성할 때에는 속기록 또는 녹음테이프를 참고로 하여 의사진행의 경과 요령(개최에서 폐회까지 회의의 경과를

요약)과 그 결과(각 의안에 대한 표결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이사가 날인 또는 서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의사록은 본·지점에 비치되어 이해 관계자의 열람용으로 이용되어야 하며(상법 제396조) 등기시에 첨부자료로 되기 때문에 편철하는 것이 바람직함.

3) 기재내용

의사록에는 ① 총회의 명칭 ② 총회개최 년월일과 개최시각 ③ 총회개최지와 장소 ④ 총주주 수와 그 주식 수(의결권 있는 주식은 별도 표시) 및 출석주주와 그 주식 수 ⑤ 의장의 개회 선언 ⑥ 의사진행요령과 결과(보고사항의 개요, 안건의 상정, 제안설명, 토론의 개요 및 표결방법과 결과) ⑦ 폐회선언 및 폐회시각 ⑧ 의사록 작성 년월일 ⑨ 의장 및 출석이사의 기명 날인 또는 서명 등이 기재되어야 함.

특히, 표결결과에 대해 만장일치 또는 다수 찬성여부를 명백히 하며, 특별결의 사항에 대하여는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었음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이사, 감사의 선임에 있어 위 피선거자들이 즉석에서 그 취임을 승낙한다는 기재가 의사록에 없으면 선임 등기시 이들의 취임승낙서를 따로 제출해야 하는 등 번거로우므로 이를 기재토록 함.

회사에 따라서는 속기록을 그대로 의사록의 내용으로 하는 경우도 볼 수 있으나 의사록의 작성요령이 있는 만큼 이에 맞추어 의사록을 따로 작성해 놓는 것이 바람직함.

(2) 의사록에 기명날인해야 할 이사

주주총회에 퇴임이사와 신입이사가 함께 출석한 경우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새로 취임한 이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충분하며 현행 등기실무도 이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

(3) 작성시기

상법이 주주총회 의사록을 본·지점에 비치하도록 요구하는 취지로 볼 때 될 수 있는 대로 총회 종료 후 지체 없이 작성하는 것이 능률적이며 등기신청이 본점소재지에서 2주간 이내에 하여야 하므로 2주간 이내에는 의사록이 작성되어야 할 것임.

(4) 공증인의 인증

회사가 주주총회의 결과에 따라 등기 신청할 경우 반드시 공증인의 인증이 필요함.

나. 주주총회에 뒤따른 이사회

주주총회를 마치고 나면 대체로 그에 따른 이사회를 개최하여 총회의 결의에 뒤따른 일이나 총회에서 위임받은 일들을 처리하는 것이 통례임. 이에는 대표이사 선임이나 이사들의 업무분장, 개별 이사에 대한 보수 및 퇴직위로금의 결정 등이 있음.

또한, 주주총회 개최결과에 대하여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 등에의 신고·보고를 해야 함.

다. 대차대조표 공고(결산공고)

이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에 대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되(상법 제449조 제3항), 당해 결산서류를 감사한 공인회계사의 명칭과 감사의견도 함께 공고해야 함(결산공고)(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수정된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 및 수정후 전기이월이익잉여금(수정후 전기이월결손금)도 함께 공고하여야 함(증발공규정 제5-17조 제2항). 물론 이 결산공고는 정관에서 공고방법으로 정한 신문에 게재하여야 함.

세법의 개정으로 대차대조표에 대한 세법상 공고의무가 없어졌으나, 상법상 대차대조표 공고의무는 그대로 존치되어 있으며, 공고를 의무화한 법상 취지도 다르므로 대차대조표는 결산 주주총회 종료 후 공고하여야 함.

라. 변경등기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사항 중에 등기사항의 변동을 가져오는 것에 대하여는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간 이내, 지점 소재지에서는 3주간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함.

통상 주주총회 결의사항 중 변경등기를 해야 하는 사항은 이사·감사(감사위원)의 선임·퇴임, 대표이사 변경과 정관 변경에 따른 등기사항 등임.

※ 상장회사에 대하여 일정 비율 이상 사외이사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

니하는 이사, 감사로 구분하여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등기
하여야 함(상법 제317조).

따라서 정관 변경내용에 회사의 사업목적, 상호, 본점 소재
지, 공고방법이나 수권자본금(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
주 금액의 변경 등이 있을 때에는 위 기간 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함.